2022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(안)

1. 지원대상 : 농식품 수출업체

신청 제외 대상

- ‘수산물’, ‘연초류’, ‘비식품’은 지원 제외
- 지원대상 품목은 주된 원료가 농·임·축산물로 분류된 것이어야 함.

☞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(한국수산회)에 문의

- 대기업(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)
- 지자체, 중기부, 한식연 등 유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
- **직전연도 10월 30일 이후 사업포기 또는 인증취득 실패 등으로 인한 정산미신청 업체**
- 사후심사 및 갱신 신청업체 중 지원연도 포함 2년간(‘21~22년)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
- **ISO22000 신청 업체 중 직전연도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**

2. 지원내용 :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

* 지원항목 등 세부내역은 정산기준 참고
*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aT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(별첨)

3. 대상인증 :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인증

* 할랄(JAKIM, MUI, MUIS KMF 등), GFSI 승인인증(FSSC22000, ISO22000, BRC, SQF, IFS, Global GAP 등), 미국 FDA, 해외유기인증, 코셔 등 별첨 지원대상 목록 참고
* **ISO22000, FSSC22000 인증 중복 신청 불가**
*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,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(예: **ISO9001, ISO14001, ISO45001, HACCP 등 제외**)

4. 지원한도 : 20백만원

※ **단, 복수인증 취득 업체**에 한해 **40백만원 지원**

※ **지자체, 중소기업청, 한식연 등 유관기관과 중복지원 불가**

(사업계획 신청 시 업체명, 인증종류 등 타 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수)

5. 모집기간 : ‘22.3.14(월) ~ 3.31(목)

*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
* ‘22년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(‘22년 취득건)
* ‘22년 인증취득 완료(인증서 발급일 기준)건만 정산가능

6. 신청방법 :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내 온라인 신청

* 로그인(신규업체 : 회원가입) → 상단메뉴[사업신청] → [모집공고/신청] →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 모집공고 버튼 클릭 (기본정보 입력,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)

※ 무역통계정보 동의서 미제출 업체 온라인 동의 필수

7.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, 참가업체 유의사항 인지조서, (가점) 외국어카탈로그

* 각 제출서류는 날인 후 스캔본 업로드 필수, 외국어 카탈로그는 PDF 또는 그림파일이 아닌, 인쇄 완료된 카탈로그 촬영 사진 업로드

8. 선정통보 : 월별 신청 건에 대해 익월 선정 통보

* 선정기준 : 신청품목의 적합성, 수출역량(매출액, 수출실적 등), 수출계획(인증취득 계획 등)
* <u>선정 통보 후 2개월 내 착수증빙 미제출시 선정철회</u>
* 착수증빙 제출서류 : 인증기관 접수증, 사업표준계약서(대행기관이용시), 입금내역(대행기관이용시), 컨설팅사통장사본(대행기관이용시)

9. 정산신청 : ' 22.11.30.까지 정산 서류 제출

-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내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정산서류 입력
- 정산방식은 월 단위 **수시 정산**이며, <u>**인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신청 권장**</u>
- <u>'22.10.31일 이후 사업포기시 차년도 사업 신청제한, 지원년도 포함 2년간 수출실적 없을 경우 차년도부터 갱신/사후심사 지원제한</u>

10. 사업절차

aT(본사)	**인증지원 대상업체 모집공고 및 안내**
⇓	
수출업체	**수출종합지원시스템**(global.at.or.kr) **통한 온라인 신청**
⇓	
aT(본사)	**선정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/ 선정 내역을 관할 aT 지역본부에 통보**
⇓	
aT(지역본부)	**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및 선정업체 사후관리**
⇓	
수출업체	**단계별 진행사항 수출종합지원시스템**(global.at.or.kr) **내 입력**
⇓	
aT(지역본부)	**사업 착수여부 확인 / 선정 통보 후 2개월 내 착수증빙 미제출 시 선정 철회 (본사에서 선정 철회 통보 문서 시달)**
⇓	
수출업체	**인증취득 완료 후 수출종합지원시스템**(global.at.or.kr) **통한 정산서류 온라인 제출**
⇓	
aT(지역본부)	**증빙 검토 후 정산**

11. 기타 유의사항

- 선정완료 후 인증종류 변경 및 추가 불가하며, 신청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aT 지역본부 담당자와 유선확인 후 진행
-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aT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이용 시에만 대행비 정산 가능
  * 컨설팅 기관 확인 :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내 공지사항
- 보조금 부정 수급제안 등 컨설팅 기관의 허위 제안을 받은 경우 aT 제보 요망
- 정산지급액은 신청 시 기재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된 배정 예산한도를 넘을 수 없음
- 허위자료 제출 등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적발 시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, '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'에 의거하여 해당업체는 제재조치 예정

12. 관련문의 : 기업육성부(061-931-0864) 또는 아래 aT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

관 할	연락처	담당자	관 할	연락처	담당자
서울경기	031-8060-6013	정혜영 주임	광주전남	062-940-7030	박은영 주임
인 천	032-272-3001	박정현 대리	대구경북	053-218-4895	최민정 대리
강 원	033-920-1549	강태권 대리	부산울산	051-947-1083	조민경 주임
충 북	043-902-9531	차수민 사원	경 남	055-608-5832	안보람 과장
대전세종충남	042-389-5017	강경민 주임	제 주	064-900-8658	양다연 사원
전 북	063-904-5926	강유정 주임			

2022. 3. 14.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

참고 1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선정평가표(안)

1. 적합성 확인

평가 구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
인증 적합성	취득(예정)인증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* ISO22000 신청업체 직전연도 수출실적 보유 여부	적합 ( )	부적합 ( )
	취득(예정)인증 품목의 적합여부(수산물, 연초류, 비식품 지원불가)	적합 ( )	부적합 ( )
	신청업체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- 갱신/사후심사 신청 시 지원연도 포함 2년간('21~'22년)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- 직전연도 10.30일 이후 사업포기 또는 정산미신청 업체	적합 ( )	부적합 ( )

< 항목별 평가 기준 >

2. 계량 평가(60점)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기준				
수출 성장성 (50점)	최근연도 총매출액(원)	20	50억원 이상	30억 이상 50억 미만	20억 이상 30억 미만	10억 이상 20억 미만	10억 미만
			20	17	14	11	8
	'21년 수출실적*	20	50만불 이상	30만불이상 50만불미만	10만불이상 30만불미만	10만불 미만	실적 없음
			20	16	12	8	4
	수출증가율 ('20 대비 '21)	10	10% 이상	8% 이상 10% 미만	4% 이상 8% 미만	4% 미만	0% 이하
			10	8	6	4	2
수출 준비도 (10점)	외국어 카탈로그** (인쇄본 기준)	5	보유			미보유	
			5			0	
	업체 단독 인증추진	5	인증 자체 추진			인증 컨설팅 의뢰	
			5			0	

*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(관세청 산하기관) 자료 활용

**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시 인쇄 완료된 제작물 사진증빙 제출 필수

3. 비계량 평가(40점)

평가항목		배점	A	B	C	D	
인증취득계획	인증취득 필요성	10	10	8	6	4	
	취득 추진계획	10	10	8	6	4	
인증연계 수출계획	제품 현황	10	10	8	6	4	
	수출 추진계획	10	10	8	6	4	

* 예산 한도 내 지원 신청 순으로 정산 지원

4. 선정기준 : 계량 및 비계량 평가결과 50점 이상 충족, 고득점 순으로 선정

참고 2 세부정산기준(안)

가. 기본제출서류

❏ **기본제출서류** : 인증서 사본, 정산신청서 및 세부내역서(지정양식), 업체통장사본

○ 대행사를 통해 인증 취득 시 대행계약서, 세금계산서, 비용 납입(업체→대행사) 완료 영수증(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) 제출

나. 인증취득비용 및 대행비 정산 세부항목 및 기준

구분	세부항목	기준	제출증빙
인증 취득 비용	심사비 및 등록비	○ 심사원의 인건비, 인증기관의 행정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	**①인증기관 발급 인보이스 및 영수증** (은행 발행 계좌이체증 등) * 인증기관→업체 발행 인보이스 및 세금계산서
	실사비 (항공료)	○ 해외에 위치한 인증기관 실사단의 국제선 왕복 항공료 (economy) - 최대 2인	**①항공티켓 또는 e-ticket** **②여행사 인보이스 및 영수증** (카드전표,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) **③실사단의 한국체류 세부일정** * 실사단이 체류기간 중 타 업체 방문시 항공료를 전체 방문업체 수로 나누어 해당분만 지급(1회 방한 다수 국내업체 실사 시)
	제품 시험비	○ 인증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분석비 및 시료운송비 (운송비 16만원 한도) **<u>*미국 FDA 시설등록의 경우 영양성분 분석비 지원불가</u>**	**①시험기관 발행 세금계산서** (인보이스, 영수증, 카드전표,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) **②시험기관 발행 제품시험결과서** **③운송사 발행 세금계산서, 지출증빙사본** (인보이스 및 영수증 등) *인증 등록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품분석비만 정산(필요시 증명자료 제출)
대행 비용	통역 및 서류번역	○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번역 및 현장심사를 위한 통역비	**①통번역사 프로필** **②통번역비용 지출증빙** (거래명세서, 영수증, 카드전표,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) **③통역결과보고서**(현장사진 등) **④번역결과물**(원문 및 번역본) * 매 건당 증빙자료 필수 제출 **<u>*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</u>**
	컨설팅비	○ 인증 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시 발생하는 컨설팅비용	**①컨설팅보고서** **②컨설팅기관에서 발급한 지출증빙** (인보이스 및 지출증빙 사본) * 인증별 400만원 한도
	교육비	○ 해당 인증취득을 위한 교육에 한해 인증별 최대 2인 지원	**①교육결과보고서**(사진포함) **②교육기관 이수증** **③지출증빙 사본** * 집합교육은 참석인원수/교육비용*2인으로 산출로 참석자 명단제출 **<u>* 인증취득에 필수요건임에 대한 증빙 제출 필수</u>**
	예비 심사비	○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예비심사 비용	**①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증빙 사본** * 예비심사 : 심사조건에 적합한 지를 본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 * 컨설팅기관 없이 자체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함 *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

구분	세부항목	기준	제출증빙
	인증대행 수수료	○ 인증대행(인증신청 및 접수 등)을 위한 수수료	**①인증대행기관에서 발행한 대행내역서** **②인보이스 및 지출증빙 사본** * 인증별 200만원 한도
	*** 해외에 소재한 인증·등록기관 관련 직접적 신청이 불가한 경우 적용** *** 대행비는 인정된 총 소요비용의 50% 한도 내 정산** *** 대행사 업무 범위 : 통역, 서류번역, 인증업무대행, 컨설팅 및 교육만 정산**		
정산 불가 항목	○ 시설설치비, 물품구입비, 지원업체의 해외현지 방문비용, 식비, 유류비, 선물비, 출장비(운영비), 렌터카 비용 등 인증 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, 세부정산기준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정산 불가 ○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할 적절한 증빙이 없는 항목 정산 불가 ○ 국내 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항목은 정산 불가 ○ 수수료, 컨설팅내역 등의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 불가		
기타 사항	○ aT 지역본부는 비용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정산 불가 ○ 증빙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업체의 원본대조필 날인 ○ 영양성분검사, 제품시험분석비 등은 인증·등록에 **필수요건인 경우**에 한해 지원 (필수요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) ○ 환율은 실제 비용 지출(송금) 당시 적용된 환율로 인정 ○ 정산금 지급 시 업체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개인사업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계좌로 송금해야할 경우 담당자 승인절차 필요		

[참고] 지원업체 정산 승인금액 산출 절차

① 인증취득비용 및 대행비 확인
② 대행비 한도 계산 : '총 소요비용'의 50%
③ '최종 정산승인금액(인증취득비용 + 50% 한도 적용된 대행비)' 산출
④ '최종 정산승인금액'의 70%를 지원업체에 지급(연간지원 한도내)

* **정산 지급액은 신청 시 '수출종합지원시스템'에 입력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된 배정예산 한도를 넘을 수 없음**

(정산예시)

○ **항목별 소요비용**

구 분	정산세부항목	소요비용(원)	승인대상 금액
인증비 (A)	심사비 및 등록비	5,000,000	승인대상 인증비(a) 6,300,000원
	실사비	800,000	
	제품분석비	500,000	
	소계	6,300,000	
대행비 (B)	통역비	800,000	승인대상 대행비(b) 5,600,000원 * 컨설팅비 400만원 정산 신청한도 적용
	컨설팅비	5,000,000	
	교육비	800,000	
	소계	6,600,000	
Total (C)= (A) + (B)		12,900,000	(6,300천원 + 5,600천원)x70% = 8,330천원

○ **정산승인금액 = 소요비용[6,300천원(a) + 5,600천원(b)] x 70%= 8,330천원**

- 정산확정 인증비(a) : 6,300천원
- 정산확정 대행비(b) : 5,600천원
  - (대행비 한도) 11,900천원 x 50% = 5,950천원

참고 3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증명 목록

연번	인증명		비고
1	ISO22000		ISO22000과 FSSC22000은 중복신청불가 (택일)
2	GFSI 승인인증	FSSC22000	
3		BRC	
4		SQF	
5		IFS	
6		SMART HACCP	
7		Global GAP	
8		China HACCP	
9	유기인증	USDA NOP	
10		EU Organic	
11		JAS	
12		중국유기인증	
13		IFOAM	
14		유기가공식품인증 (한국)	수출목적의 인증 취득 건이어야 하며,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. ※ 수출 포장재 또는 수출 진행 증빙자료 첨부
15	Halal		
16	Kosher		
17	Vegan		
18	EAC		
19	Gluten-free		
20	NON-GMO		
21	재외국 등록	USA FDA (미국)	
22		BPOM (인도네시아)	
23		VFDA (베트남)	

* 인증기관의 국내외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·품질 관련 해외인증제도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, 상기 외 인증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

** 필요 시 수출확대에 필요한 인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